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73
----------	------

2018. 2. 2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11. 14 전철수 의원

나. 회부일자 : 2017. 11.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8.2.27.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전철수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주택법」 개정 사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현행 「주택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조항을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서 삭제하고 이 조례로 이동·신설함.

### 3.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2015년 8월 11일('16.8.12 시행)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체계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법 체계에 따른 조례 정비로 특이사항 없음.

주택 조례 <삭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신설>
<p>제9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 ③ (생략)</p>	<p>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5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